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00시 21분



목차

목차	2
완료된 입법예고	3
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

진행중인 입법예고

완료된 입법예고

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1.11.08 00:00 등록자 운영중 3241 총무과 공고(입법예고)

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. 공보담당관은 시보에,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기간 : 2021. 11. 8. ~ 11. 15.(7일간)
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
다. 제출기한 : 2021. 11. 15.까지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
마. 연 락 처 : 총무과 운영중(061-659-3241)

첨부파일

 (입법예고 공고문)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hwp[미리보기](#)[목록](#)

Yeosu Web Contents

